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. 2. 8 선고 2017가단21274 판결
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2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C 전 700m² 및 D 대 330m²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7. 4. 11. 접수 제130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일부취하된 부분은 제외)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이훈재

별지